

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김기웅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16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27.

발 의 자 : 김기웅 · 김태규 · 이달희
박덕흠 · 윤용근 · 임종득
백종헌 · 최은석 · 박성훈
최형두 · 김 건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노인·임산부·어린이·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등에 대하여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, 「도로교통법」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을 포함하여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도 있도록 함.

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은 개별 지역에 대한 일반적인 지정 근거에 불과하여 초고령 지역의 생활도로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정책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음. 또한, 「도로교통법」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은 노인복지시설, 의료기관 등 일정 시설을 중심으로 지정되고 있어 실제 고령자가 많이 거주하는 노후 주거지역의 생활도로를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음.

이에 고령층 비율이 높은 지역의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아니한

생활도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‘노인보행
안심존 조성사업’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(안 제9조제1항제4호
신설 등).

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고령 인구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의 생활도로(주택 또는 상가 밀집지역 내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를 말한다) 등 고령 보행자의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한 구역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) ① 특별시장등은 다음 각 호에 서 정하는 구역을 보행환경개 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. 1. ~ 3. (생 략) <u><신 설></u> 4. (생 략) ② ~ ④ (생 략)	제9조(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) ①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고령 인구 비율이 대통령령</u> <u>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</u> <u>역의 생활도로(주택 또는 상</u> <u>가 밀집지역 내 차도와 보도</u> <u>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를</u> <u>말한다) 등 고령 보행자의 보</u> <u>행환경 개선이 필요한 구역</u> 5. (현행 제4호와 같음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